

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2002-15
번호

제출년월일 : 2002. 2

제출자 : 김제시장

1. 개정이유

-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로부터 안전조업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 추진업무를 위한 정원이 승인(순증 3명)
- 기초생활보호대상자,모자·보육가정,장애인등 복지대상자 및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본격시행에 따른 복지업무 증가로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로 부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따라 정원이 승인(순증 17명) 되어 이에 맞게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정원 증원(안 제2조)

구분	현행	개정	증원
총계	921인	941인	20인
집행기관의 정원	901인	921인	20인
의회사무기구의 정원	20인	20인	

-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의 일반직전환 - (정원책정승인:5명)
 - 여성복지담당 1명(6급), 여성복지상담원 2명(7·8급), 아동복지지도원 2명(7·8급)
- 어업지도 관공선 인력보강 승인 - (순증 3명)
 - 지방선박8급(1명), 지방통신 9급(1명), 지방기능9급(선박) 1명
- 별정직 명칭조정(행자부지침)
 - 나관리요원→한센병관리사, 생활체육지도원→생활체육지도사,
-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 배치 - (순증 17명)
 - 사회복지직 7급(4명), 사회복지직 9급(13명)

3. 참고사항

- 어업지도 관공선 인력보강 승인
[전북 행정 12200 - 718(2001. 12. 31)호]
-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의 일반직전환 지침 통보
[전북 행정 12200 - 656(2001. 11. 28)호]
-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 통보
[전북 행정 12200 - 267(2002. 2. 5)호]

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중 “921인”을 “941인”으로 하고, 동조제1호중 “901인”을 “921인”으로 한다.

김제시조례 제380호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[표 2]

구 분	정 원
정원의 총수	973인
1. 집행기관의 정원	953인
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	20인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조례의 개정)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조중 단서를 삭제한다.

제3조중 제5호를 삭제하고, 제8호 “나관리요원”을 “한센병관리사”로 하며, 제11호와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, 제14호 “생활체육지도원”을 “생활체육지도사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
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																	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921인</u>으로 하며,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901인</u> 2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<u>941인</u>----- ----- 1. ----- : <u>921인</u> 2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																
<p>제2조(정원에 관한 적용례) 김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 조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 까지는 「표1」을, 2001년 7월 31까지 「표2」를 각각 적용한다 「표1」(생략)</p> <p>[표 2]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0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70%;">정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정원의 총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953인</u></td> </tr> <tr> <td>1. 집행기관의 정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933인</u></td> </tr> <tr> <td>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정원	정원의 총수	<u>953인</u>	1. 집행기관의 정원	<u>933인</u>	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	20	<p>제2조(정원에 관한 적용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표1」(현행과 같음)</p> <p>[표 2]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0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70%;">정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정원의 총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973인</u></td> </tr> <tr> <td>1. 집행기관의 정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953인</u></td> </tr> <tr> <td>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인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정원	정원의 총수	<u>973인</u>	1. 집행기관의 정원	<u>953인</u>	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	20인
구분	정원																
정원의 총수	<u>953인</u>																
1. 집행기관의 정원	<u>933인</u>																
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	20																
구분	정원																
정원의 총수	<u>973인</u>																
1. 집행기관의 정원	<u>953인</u>																
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	20인																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	
<p>제2조(정의)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. <u>다만, 비서실장과 비서를 제외한다.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<단서 삭제></p>
<p>제3조(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) (생략)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</u></p> <p>6. ~ 7. (생략)</p> <p>8. <u>나관리요원</u></p> <p>9. ~ 10. (생략)</p> <p>11. <u>여성복지상담원</u></p> <p>12. <u>아동복지지도원</u></p> <p>13. (생략)</p> <p>14. <u>생활체육지도원</u></p> <p>15. (생략)</p>	<p>제3조(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6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한센병관리사</u></p> <p>9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14. <u>생활체육지도사</u></p> <p>15. (현행과 같음)</p>